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습비 초과 징수분의 학습자 반환 근거 마련〉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8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국 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0.
3. 회부연월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하는 상황으로 학부모 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여실히 보여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초과징수’)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초과징수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illegible]

② (생략)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¹⁾는 학원 등록 절차를 규정하면서 교습비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5조²⁾는 학원 등록·신고 시 교습비 등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³⁾에 따라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23조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

-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②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학습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따라 학원 등이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를 납부한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인 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등 학습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교습비등을 등록·신고한 부분과 달리 초과징수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초과징수분을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습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최근의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여 적발된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4년 까지 총 469건의 학원비 초과징수가 적발되었으며, 2022년 128건에서 2024년 177건으로 약 38.3%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학원비 초과징수는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원가가 모여있는 경기(229건), 서울(96건) 순으로 그 적발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에 학습자가 대처하는데에 도움이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7의3.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될 것으로 기대됨.

<교습비 초과징수 적발 건수>

구분	2022년(A)	2023년	2024년(B)	계	증감률(%) (B-A/A)
적발건수	128	164	177	469	38.3

자료: 교육부

- 아울러, 2024년 사교육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7.7%가 증가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52만원, 중학교 49만원 등으로 각각 2023년 대비 5.8%, 9.0% 증가하였음. 이와 같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초과징수된 부분에 대한 반환 의무 규정은 부담 경감의 취지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2024년 사교육 시장 현황>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억원)	2023년	271,144	124,222	71,534	75,389
	2024년	291,919	132,256	78,338	81,324
	증감률(%)	7.7	6.5	9.5	7.9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2023년	43.4	39.8	44.9	49.1
	2024년	47.4	44.2	49.0	52.0
	증감률(%)	9.3	11.1	9.0	5.8

자료: 교육부

□ 다만, 안 제15조제4항 후단은 교습비를 등록·신고한 것과 달리 초과징수한 부분에 대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초과징수된 부분이 즉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무효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등에 대하여 무효로 규정⁵⁾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계약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효력을 부정하여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학원 교습비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도록 하도록 하여 행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정적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당사자 간 계약에 기초한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함.

등록·신고제도가 허가제에 비하여 완화된 규제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교습비 초과징수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신고 제도의 취지, 계약 자체를 법률로써 무효로 할 정도의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낮은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재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감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6)에 따라 교습비의 조정기준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학원이 조정기준액 내에서 교습비를 상향조정하려는 경우에 실무상 “신고”⁷⁾로 이를 처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은 조정기준액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습비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조정기준액 내에서 신고 없이 교습비를 초과징수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변경 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 이후 집행상의 혼선을 방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교육감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교육지원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7)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이때 신고제는 허가제와 달리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통보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상 행정청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려는 취지임.

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초과징수’에 대한 적용 사례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행 학원법(제18조)상의 학원비 등의 반환 근거와 그 사유⁸⁾를 보면, 동법 시행령에서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등에 대하여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이미 교습비 반환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는 학원설립 운영자와 학습자 사이의 교습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여, 학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⁹⁾으로, 현행법 취지에 비추어 당연 무효 규정을 두지 않고, 반환의무만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1의2. 법 제17조 제1항및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9) (2021헌바74, 2024. 8. 29.) 헌법재판소는 교습계약의 특성상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므로, 교습계약에 관하여 국가가 일부 개입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반환여부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교습비등 반환 규정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

- 참고로, 2016년 동일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어 입법예고까지 되었으나, 학원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가 있어 철회된 바가 있음.
- 관계기관 의견으로 교육부는 현행 학원법상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만 규정되어 있어 학습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반환기준,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해야 하는 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